

제 649 호
1978. 4.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자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231 호 :	서울특별시 텃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 3
제 1232 호 :	서울특별시 행정서사정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4
◎ 훈 령	
제 483 호 :	서울특별시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6
◎ 고 시	
제 151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도로)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9
제 152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학교) 결정,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0
제 15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0
제 15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 11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계 155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	12
계 15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및광장) 지적승인.....	12
계 15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용지) 시행허가.....	13
계 16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3
계 161 호 :	서울특별시 구청사 위치변경 고시.....	14
계 16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14
계 16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5
계 16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6

◎ 공 고

계 148 호 :	교육공무원 공로 퇴직수당 지급공고.....	16
계 151 호 :	환지예정지 및 환지처분지 일부변경 및 지정 공고.....	17
계 152 호 :	환지처분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 공고...	18
계 156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18
계 157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8
계 15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9
계 5 호 (종로구공고) :	공인신조공고.....	20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8년 4월 18 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31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보건의소 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 보건의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의료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엑스선 판독료와 촬영료 및 치과처치 진료비는 의료보험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
의 의료법 제 3 조의 별. 의원별 구분과 지역별 비율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치과처치는 분할 동장이 추천하는 유료사업장 근로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의료보호 1차진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제 3 조 (수수료의 감면 및 감액)

①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황색진료증 소지자는 진료 별표중 제 2 호, 제 3 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진료증 소지자는 진료 별표중 제 2 호에서 정한 수수료는 면제하고, 제 3 호에서 정한 수수료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 4 조 (세입 재활용) 먹는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 수수료와 항결핵제 (2차약) 보급 수수료 징수에 따른 세입은 각각 가족계획사업비, 결핵사업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 6 조 (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 7 조 (시행세칙)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서울특별시 피임약제 및 기구의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수수로 및 진료비액표					
종	목	요	액	비고	
1	건강진단증 및 진단서 기타	1	통	200 원	
2	먹는 피임약제 및 기구	먹는 피임약 (21정 혹은 28정입)	1	싸이클	50 원
	보급수수로	콘 돔 (6개입)	1	갑	20 원
3	항결핵제 (2차약) 보급	가. 에담부롤+피라진아마이드+티팜피신	1	인1개월분	5,000 원
		나. 에담부롤+피라진아마이드+카나마이신			3,000 원
		다. 피라진아마이드+티팜피신+카나마이신			6,000 원
		라. 에담부롤+티팜피신+카나마이신			5,000 원
국부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서사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8. 4. 18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수당)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채점관의 수당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 수당지급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232 호 서울특별시 행정서사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서사 정원 등에 관한					

<별표1>					
행정서사종류별정원표					
구	별	계	일반행정서사	특수행정서사	외국어번역행정서사
총	로	106	75	1	30
중	구	90	59	1	30
동	대 문	105	102	1	2
성	동	100	97	1	2
성	부	87	84	1	2
도	봉	107	104	1	2
서	대 문	74	71	1	2
마	포	55	52	1	2
용	산	104	73	1	30
영	동 포	141	138	1	2
관	악	101	98	1	2
강	남	46	44	1	1
강	서	55	53	1	1
운	령	53	51	1	1
천	호	57	55	1	1
계		1,281	1,156	15	110

훈 령

서울특별시 행정자료실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8.4.18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483호

서울특별시행정자료실운영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자료실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고통계 규정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보고통계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관장) 자료실은 서울특별시청내에 두며 통계담당관이 관장한다.

제3조(자료수집 및 관리) ①각실과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된 각종자료와 외부기관에서 송부한 자료 중 1부씩을 자료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통계담당관은 수집된 자료의 목록을 도서분류법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매년 1회씩 자료목록을 작성하

여 각실과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통계담당관은 각실과로부터 행정수행상 필요한 자료실 비치용 도서의 목록을 분기별로 보고 받아 일괄 구입 비치한다.

제4조(열람자의 범위) 자료의 열람은 시 소속 공무원에 한한다. 다만, 유관기관 또는 외부인의 경우 통계담당관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열람시간) 자료실내에서 자료의 열람시간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근무시간에 의한다.

제6조(열람장소)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내에 한 한다.

제7조(대여) 자료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사서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제출하고 열람카드에 소정양식을 기입 제출한 후 자료볼 대여 받는다.

제8조(반납) ①열람자가 퇴실 할 때에는 자료볼 반납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반납을 받은 직원은 열람카드를 정리한 후 신분증을 반환하고 자료볼 소정위치에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자료실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실을 출입할 때에는 직원에게 출진을 말하고 휴대품은 보관시각까지
2. 타인의 독서 또는 연구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정숙하여야 한다.
3. 복언을 금한다.
4. 자료실 오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기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0 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전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직원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퇴실명령에 불응한자에게 통계담당관은 자료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1 조 (열람권수) 열람자가 일시에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통계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표양지 및 잡지류 2권이내
2. 건물지 3권이내
3. 수첩으로 분철된 동일자료는 전철

제 12 조 (변상) ①자료를 오손 또는 분실한 열람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변상은 동일 자료나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으로 변상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값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 13 조 (변상절차) ①통계담당관이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자료변상 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변상기간을 명시하여 당해 공무원과 봉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공무원이 기간내에 변상하지 아니 할 때에 봉급담당직원은 당해 공무원의 봉급에서 변상액을 공제하여 통계담당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봉급액의 30%를 초과할 때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통계담당관은 변상금으로 당해 자료를 즉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시 수입으로 하는 동시에 자료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기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자료엔타운영 규정(서울특별시 훈령제 351호)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지제 1 호>							
<u>자 료 변 상 통 지 서</u>							
변 상 자			본 실 자 료			변 상 액	비 고
소 속	직	성 명	자료명	발행년도	저차명		
금전으로 변상할 시는 19까지 변상액을 납부하여야 함.							
19 통 계 담 당 관							
귀 하							
<u>자료변상통지서수명증</u>							
변 상 자			본 실 자 료			변 상 액	비 고
소 속	직	성 명	자료명	발행년도	저차명		
자료변상 통지서를 정히 수령하며 변상기간내에 변상하지 못할시 서 울특별시 행정자료실운영 규정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자 봉급에서 공제하여도 이의 없습니다.							
소 속			직			성명	
봉급담당자: 소 속			직			성명	
통 계 담 당 관 귀 하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51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도로)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가.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조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노인다.

1978. 4. 11.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용의 청사	서대문구 녹번동 산 38 - 8 부근	5,011.6 (1,516명)	사유지 (은명출장소)
변경	"	마포구 도화동 175-1 일대	2,335 (706.4명)	폐지

나. 도로(은명출장소)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	8m	90m	녹번동 100-37	녹번동 86-40	폭원확장
기정	"	3	6	60	녹번동 86-40	녹번동산 39-9	
변경후	"	2	8	"	"	"	
기정	"	2	6	110	녹번동산 42-1	녹번동산 39-9	
변경	"	1	10	"	"	"	폭원확장

※ 별첨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 제 152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학교)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학교)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던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와 가.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과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4.11.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공용의청사	마포구용강동 26-18 부근	2,170.6 (656.6 평)	현마포구보전부지 (마포보전소)
신설	공용의청사	영등포구여의도동 1-412 부 근	1,031.4 (312 평)	(여의도 동사무 소 및 파출소)
기정	학 교	영등포구여의도동 1-163 일 대	24,793.5 (7,500 평)	서고시 제 89 호 ('76.4.22) 결정
변경 후	학 교	영등포구여의도동 1-163 일 대	25,575 (7,736.4 평)	폐지 : 312 평 년적현실화: 중 548.4 평

※ 별첨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 제 1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9 호 (78.2.10)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4.13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중로	1	175	20m	2,800m	세종로 (광 1)	충신동 (대 2-6)	중 1-175에 편입
폐지	"	"	41	15"	1,200"	세종로	인회동	
기정	"	"	54	15"	230"	청진동	종로선	
변경	"	1	176	20"	230"	청진동(중1-175)	중로 1가(광로1)	
폐지	"	3	8	12"	1,050"	인의동(대 3-2)	충신동(대 2-6)	
"	소로	"	"	6"	130"	훈정동 119	인의동 93	
"	"	"	"	"	70"	인의동 107	인회동 100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5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
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4. 13.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중로	1	177	20m	150m	군자동 (광로 5 호)	군자동 250	우회도로
"	"	2	160	15	300	답십리 517 (광-5)	"	"
"	"	"	161	15	290	군자동 (광-5)	"	"
"	"	"	162	15	200	"	군자동 205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5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가. 결정조서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4. 14.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운동장	성동구마장동 405 부근	14,446 ㎡	

※ 별첨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69 호('75.10.28) 및 건설부고시 제 64 호('78.3.29)로 시설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조서

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4. 15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지적 승인	대로	1	45	35	5,000 ㎡	문래동광장	오류동광장	문래동광장 - 순환도로간 5,000 지적고시
"	"	2	52	30	18,050 ㎡	사천광장	시흥동시계	양명 6 가광장 - 시흥동시계 14,250 지적고시

나. 광장지적승인 조서				
시 설 명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농동교통항장	116	농동 92,95,23 일대	29,800	
※ 별첨도면포사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9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용지) 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1 호 (77.9.26) 로 시설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2 호 (77.10.18)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학교용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인가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5)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78. 4. 15.</p> <p>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시행기 : 영등포구고척동 1-1의 22 필지</p> <p>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p> <p>1) 서울계남국민학교 신설</p>		<p>다. 사업규모 및 면적 : 18,069 (5,466 평)</p> <p>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사업일시계획인가 즉시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년</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p> <p>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생략)</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0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3 호 (78.3.24) 로 시설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지적승인하였거 도시계획</p>				

법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4.15. 서울특별시장
--	---

구분	등급	유별	번호	복원(m)	연장(m)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소로	1		8	560	개봉동 139-116	고척동 254-11	
변경	중로	3	69	12	560	"	"	노복확장

※ 별첨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61 호

서울특별시구청사위치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관할구청중 다음과 같이 청사의 위치가 변경되었기 고시한다.

다

구 명	위 치		이 전 일 자
	변 경 전	변 경 후	
용산구	용산구 문배동 24-2	용산구 원효로 1가 25	78. 4.18.

1978. 4.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서울특별시고시제 162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4.1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고등학교	강남구양구정동 321부락일대	18,500㎡ (5,596명)					
<p>○서울특별시고시제 163 호 (77.3.16)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p> <p>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78. 4.18 서울특별시장</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98 호 (78.3.15)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일부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p>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가정	중학교	강남구도곡동산 1 의 142 (영동 1 지구 2 봉구 401 부락)	6,271 명	제지				
변경	"	"	"					
신설	"	강남구서초동산 144 일대	9,000 명					
나. 폐지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육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가정	소로	3	1	6	200	1지구 2봉구 324B/L	1지구 2봉구 800부락	노선 폐지
변경	"	"	1	6	200	"	"	
가정	"	"	2	6	90	서초동 (광로)	서초동산 150-17	
변경	"	"	2	6	90	"	"	
가정	"	"	3	6	110	"	서초동산 146-4	
변경	"	"	3	6	110	"	"	
별첨 도면상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6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6 호(76.8.27)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된 30,140 명중 도시계획시설(학교)명칭 변경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 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4. 1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강남구도곡동 91번지의 35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숙명여자중고등학교 이전 신설

다. 사업의 규모(면적): 16,916평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 가 53-12 학교법인 숙명학원이사장 태완선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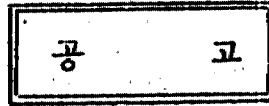
착 공: 1978. 6. .

준공예정일: 1979. 12.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48 호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

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지급 규정 제 4 조외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1. 수당지급 대상자

공립 초·중등학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

가. 연 령

1) 60세이상

2) 신체 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세이상

나. 경력(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 통산)

1) 30년이상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

<p>나) 제적중 자급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p> <p>다) 재적중 시, 도 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p> <p>2. 수당지급일 : 1978년 6월 30일</p> <p>3. 신청기간 : 1978년 5월 13일~ 5월 22일 (10일간)</p> <p>4. 신청절차 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인의 소유기관 및 감독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p> <p>5. 지급액 가산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지급액수를 곱한 금액</p> <p>6. 지급절차 가. 대상자 결정통지 지급대상자의 근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 또는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한다.</p> <p>나. 수당지급장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p> <p>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교육구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1978. 4. 12</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p>	<p>◎서울특별시공고제 151 호</p> <p>관저예정지및 관저처분지 일부변경및 지정공고</p> <p>1. 서울특별시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관저예정지 및 관저처분지 일부토지에 대하여 관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공고 제 58 호 (78.2.2)로 공람공고한 바, 의견서 제출이 없으므로 관저계획변경 공고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 및 행정명령취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 관저변경 지정하قت기 공고한다.</p> <p>2. 관저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분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3. 조서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발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불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 4. 14</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사업명 :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p> <p>2. 변경내역 : 서울시 동대문구북동 일부토지</p> <p>3. 변경도서 : 별첨 (서울특별시</p>
---	--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
구청 시민홀에 비치)

◎서울특별시공고제 152 호

환지처분 (망우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일부)공고

1.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망우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별첨도서 내용과
같이 환지처분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
업법 제 6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
다.

2. 환지확정지점서 및 도면은 서울특
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
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공람
에 공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로 가름한다.

1978. 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치 : 동대문구 북동 일부토지
다. 면적 및 필지수 : 152,271.7평
(1,983 필)

◎서울특별시공고제 156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치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94 호 (78.3.22)로

환지계획변경 공람 공고한 영동
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
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
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78. 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영동 제 1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4,007.5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서초동 859외
2호의 37 필지


◎서울특별시공고제 157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 영동 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아파트지구)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
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
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14 일간

<p>일반의 용도에 공하고자 한다.</p> <p>2.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3. 본 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8. 4.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환지계획변경내역)</p> <p>가. 사업명 :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p> <p>나. 변경면적 : 6,614.1평</p> <p>다. 변경위치 : 강남구서초동산 105번지의 1호의 22필지</p> <p>◎서울특별시공고제 158 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118 호(78.3.23)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동시행령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 규정에 의거 이를</p>	<p>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8. 4. 15</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시행자 : 강남구 도곡동산 7의 2의 3필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단국중고등학교 신축건설</p> <p>다. 사업의 규모(면적) : 11,630평</p> <p>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의 262 안신연손아파트 124호 학교법인 단국대학이사장 박홍숙</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공 : 1978. 5. . 준공예정일 : 1979. 2. .</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별첨)</p> <p>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p>
--	--

토지명세와 소유권조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영동구회정리추가지구 도곡동 계	1104-1	채비지	548.80 평	방배동1-11	학교법인단국대학
	1104-2	"	731.20 평		"
	산7-2	임야	3,720 평		함경자
	산7-3	"	6,630 평		"
			11,630 평		
<p>◎ 종로구공고제 5 호</p> <p>공인신조공고</p> <p>종로구재개발사업분임징수관(토목과, 도시정비과) 및 종로구 재개발사업 분임지출원의 공인을 신조 사용토록 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p> <p>1978. 4.10</p> <p>종로구청장</p> <p>1. 사용일자: 1978. 4.10</p> <p>2. 공인의 인영</p>					
인					
명					
공인	종로구재개발사업 기금분임 지출원		종로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징수관 (도시 정 비 과)		

인 명		<p>전라북도 전주시 전출을 명함.</p> <p>◎ 1978. 4.13</p> <p>서대문구 양광초 지방행정서기보</p> <p>제주도 전출을 명함.</p>
공인명	<p>중로구계개발사업기금분임장수관 (토 목 과)</p>	<p>◎ 1978. 4.24</p> <p>경북 의성군 박남철 지방행정주사</p>
	<p>사 령</p> <p>◎ 1978. 4.11</p> <p>동대문구 김학봉 지방행정서기</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중구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 장</p>